

1.약관명: 대출거래약정서(주택도시기금대출 : 가계용)

2.시행일: 2024.10.17

3.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: 미적용

주택도시기금대출 약관 일부개정 전후 대비표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<p>제 1조 거래조건</p> <p>지연배상금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연체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 이자율 + 연 4%연체기간이 3개월 초과인 경우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 이자율 + 연 5%기한의 이익 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하인 경우 대출금 잔액에 대해서 이자율 + 연 4%기한의 이익 상실일로부터 3개월 초과인 경우 대출금 잔액에 대해서 이자율 + 연 5% <p>※ 다만, 지연배상금률이 연 10%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0%를 적용합니다.</p>	<p>제 1조 거래조건</p> <p>지연배상금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연체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 이자율 + 연 4%연체기간이 3개월 초과인 경우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 이자율 + 연 5%기한의 이익 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하인 경우 대출금 잔액에 대해서 이자율 + 연 4%기한의 이익 상실일로부터 3개월 초과인 경우 대출금 잔액에 대해서 이자율 + 연 5% <p>· 다만,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개인채무자보호법”)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원금이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경우 연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 시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.(단, 본 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총 대출잔액에 대해 연체이자를 부과합니다.)</p> <p>※ 다만, 지연배상금률이 연 10%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0%를 적용합니다.</p>	<p>개인채무자 보호법 제정에 따른 단서 조항 신설</p>

개정 전	개정 후	비 고
<p>제3조 대출이자율, 지연배상금률의 변동 및 지연배상금</p> <p>① 대출이자율, 지연배상금률, 대출기간, 호당대출한도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의 기금 운용계획에 따릅니다.</p> <p>② 기금 운용계획 변경 등으로 제 1 조에서 정한 이자율 또는 지연배상금률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가계용)에 따르기로 합니다.</p> <p>③ 이자·분할상환금·분할상환원리금을 납입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납입일 전일까지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제 1 조에서 정한 지연배상금률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.</p> <p>④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,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가계용) 제 7 조 또는 이 약정 제 6 조 및 제 7 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때부터 대출 잔액에 대하여, 즉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.</p>	<p>제3조 대출이자율, 지연배상금률의 변동 및 지연배상금</p> <p>① 대출이자율, 지연배상금률, 대출기간, 호당대출한도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의 기금 운용계획에 따릅니다.</p> <p>② 기금 운용계획 변경 등으로 제 1 조에서 정한 이자율 또는 지연배상금률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가계용)에 따르기로 합니다.</p> <p>③ 이자·분할상환금·분할상환원리금을 납입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납입일 전일까지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제 1 조에서 정한 지연배상금률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.</p> <p>④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,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가계용) 제 7 조 또는 이 약정 제 6 조 및 제 7 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때부터 대출 잔액에 대하여, 즉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.</p> <p>⑤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원금이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경우 연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 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 7 조에 따라 연체이자를 납입하기로 합니다.(단, 본 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는 제외)</p>	<p>개인채무자 보호법 제정에 따른 단서 조항 신설</p>

개정 전	개정 후	비 고
<p>제6조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등</p> <p>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은행은 서면으로 독촉하고,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은행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본인은 은행에 대한 해당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.</p> <p>(이하생략)</p>	<p>제6조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등</p> <p>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은행은 서면으로 독촉하고,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은행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본인은 은행에 대한 해당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. 다만,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원금이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경우 연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 시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방법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일 등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제 6 조를 적용합니다.</p> <p>(이하생략)</p>	<p>개인채무자 보호법 제정에 따른 단서 조항 신설</p>